

혼잡통행료업무규정

제정 2006.11. 2 규정 제569호

개정 2014. 4. 1 규정 제745호

2016. 7.12 규정 제8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남산1,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 대한 혼잡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 징수업무 및 이를 위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범위) 공단의 남산1,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혼잡통행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
2. 징수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
3. 요금관리소 운영

제4조(혼잡통행료 감면) 경형승용차등 시장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근무제도) 교통시설운영처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근무방법, 휴무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수입금 관리

제6조(관리책임) 통행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7조(영수증 발행) 남산1,3호터널 통과차량에 대하여 현금 또는 정액권, 교통카드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행(정액권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정산) 소장은 혼잡통행료 징수원(이하 “징수원”이라 한다)이 근무시간 동안 징수한 수입금을 근무교대시 마다 차질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 결산 및 납입) ①소장은 요금소별로 일일 수입금을 결산하고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금고에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근무 종료후 정산서와 대조하여 수입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 보고) ①소장은 납입영수증을 첨부한 일일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 매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월 수입금 및 차량 통행량을 익월 20일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 제11조(과오납금 등 정산 및 납입)**<본조 개정 2014.4.1> ①소장은 일일 발생하는 과오납금(후납 포함)현황을 징수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소장은 과오납금중 환불을 위하여 요금소별 3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③공단은 과오납금 환불안내문을 차량소유주에게 월1회 우편으로 고지하고, 미환불 과오납금과 후납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서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제3장 과태료 부과·징수

-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공단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 한 차량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4.1)
-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공단은 100분의20을 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 ③ 공단은 제2항에 의한 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 ④공단은 1차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2차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이하 “독촉장”이라 한다)을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여야 한다.(신설 2014.4.1)
- ⑤공단은 1차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4.1)
- ⑥공단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메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4.1)

제13조(과태료 부과취소 및 변경) 공단은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부과취소 또는 변경고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동차 압류등록 촉탁) 공단은 독촉장을 송달받고서도 기한 내에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하여 공단은 즉시 서울시에 압류등록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결과통보) 공단은 과태료 부과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제4장 정액권 환불 및 폐기(개정 2014.4.1)

제17조(정액권 환불)<본조개정 2014.4.1> 공단은 정액권 환불 신청시 신청서와 정액권을 제출받아 정액권 실물의 위조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시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2014.4.1)

제18조(정액권 폐기) 공단은 회수한 정액권을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곳을 천공하여 매분기 마다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중지)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혼잡통행료징수를 일시중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혼잡통행료 후납징수) 소장은 남산1,3호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부득이 하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 등의 이유로 후납을 요청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7.12.)

제21조(종사자의 의무)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종사자는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이용시민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관리) 소장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일일, 주, 월)하여야 한다.

부 칙(2006. 11. 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4.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